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83
- 나. 제 안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안일자: 2023년 5월 19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5월 25일(목)

### 2. 제안사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상점가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자치법규 수정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범위 산정 관련 단서조항 삭제(안 제3조 제1항)
- 나. 구역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 삭제(안 제3조 제1항 제2호)
- 다. 구역내 건축물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 삭제(안 제3조 제1항 제3호)
- 라. 안 제3조 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4. 관계법령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2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

##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5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에 “골목형상점가<sup>1)</sup>”를 신설함에 따라 제정되었고, 이번 개정안은 제정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sup>2)</sup>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 된 것으로서 그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범위 산정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 안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였음.
- 그리고, 안 제3조 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음.
- 참고로, 조례안 관련 타 자치구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 그 중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2022. 1. 11.)

12개 자치구에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기준’을 삭제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면서 기준요건 또한 골목상권의 특성을 담지 못하여 지정을 어렵게 했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향후, 동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 골목형상점가 신설 후 그간 지적되어 왔던 지정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골목형상점가 신규 발굴이 활발해지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됨.

# 첨부 1

##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타 자치구 현황

(‘23. 5월 기준)

연번	자치구	조례명	시행일	동의요건	비고 (개정)
1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1.12.24.	- 상인 5분의 3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2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1.12.29.	- 상인 2분의 1 이상	○
3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1.12.31.	- 상인 2분의 1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4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1.5.10.	- 상인 2분의 1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5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10.27.	- 상인 2분의 1 이상	○
6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1.4.8.	- 상인 2분의 1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7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2.12.30.	- 상인 2분의 1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8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2.5.6.	- 상인 2분의 1 이상	○
9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1.5.7.	- 상인 2분의 1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10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1.10.7.	- 상인 2분의 1 이상	○
11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9.15.	- 상인 2분의 1 이상	○
12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1.5.4.	- 상인 2분의 1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13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2.7.6.	- 상인 2분의 1 이상	○
14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1.7.8.	- 상인 2분의 1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15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22.4.7.	- 상인 2분의 1 이상	○
16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1.5.6.	- 상인 2분의 1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17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2.11.10.	- 상인 2분의 1 이상	○
18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1.9.29.	- 상인 2분의 1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19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2.31.	- 상인 2분의 1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20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2.7.14	- 상인 2분의 1 이상	○
21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2.10.27.	- 상인 2분의 1 이상	○
22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23.2.1.	- 상인 2분의 1 이상	○
23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3.1.6.	- 상인 2분의 1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24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1.9.30.	- 상인 5분의 3 이상 -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25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9.7.	- 상인 2분의 1 이상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1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생략)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삭제>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삭제>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